새로운 도약,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

2026. 9. 14.

심사결과보고

의안 번호	의 안 명	심사결과	비고
4614	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	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

의안 번호	4614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6. 9. 14.

의회운영위원회

1. 회부안건

「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8월 27일, 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5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

다. 상정 및 심사일자 :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

의회운영위원회 상정 및 심사·의결(2026. 9. 14.)

3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의원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 의원당선인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함(안 제2조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김현아)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, 교육연수의 대상을 '의원 당선인'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, 임기 개시전 공백기에 예산 심사 요령 등 필수 실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, 의정활동의 원활한 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○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 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, 당선 직후부터 체계적인 의정 실무 교육을 하는 것은 당선인의 의정 이해도를 높이고, 의회 운영의 초기 공백을 방지하는데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○ 본 개정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당선인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진입을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, **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**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"원안가결"

7. 소 수 의 견 : 없 음

8. 기타특이사항 : 없 음

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이하”를 “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① ----------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26. 6. 2.] [법률 제21737호, 2026. 6. 2., 일부개정]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9. 14.>

□ 공직선거법 [시행 2026. 6. 2.] [법률 제21754호, 2026. 6. 2., 일부개정]

제190조(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 ① 지역구시·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(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. <개정 1995. 4. 1., 2000. 2. 16., 2005. 8. 4.>

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·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,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제190조의2(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(이하 이 조에서 "의석할당정당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,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.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.

②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(整數)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,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(整數)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. 다만,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(整數)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(整數)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.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